#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

제 정 2008. 5. 9 개 정(1) 2015. 10. 30 개 정(2) 2017. 9. 21 개 정(3) 2018. 5. 28 개 정(4) 2019. 2. 17 개 정(5) 2020. 9. 16 개 정(6) 2023. 10. 16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공사의 소속직원(공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으로 한다.

②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임임원 및 일반직, 별정직 직원을 포괄한다.

### 제2장 정 의

제3조(성희롱·성폭력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1. "성희롱"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- 2. "성폭력"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## 제3장 기관장의 책무

제4조(사장의 책무) 사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전담창 구의 설치·운영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·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성희롱·성폭력 고충전담창구

- 제5조(양성평등 고충전담창구) ①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, 소속 직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 및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인사제도개선 등 직원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내에 양성평등 고충전담창구(이하 "고충전담창구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상담원(이하 "상담원"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, 인사 또는 복무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상담원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,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③고충상담시의 심리적 안정 및 용이한 상담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 한 성(性)의 상담원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④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  - 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  - 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성희롱·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  - 5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업무
  - 6. 일·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등의 직원 의견 청취 및 상 담의 업무
  - ⑤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5조의2(사이버 신고센터)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기관내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5조의3(고충처리 업무의 지원) 성희롱·성폭력 상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,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 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- 제6조(예방교육) ①담당자는 매년 당해년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강의,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 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  - 2. 성희롱·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 - 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,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
  - 4.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 - 5.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
  - ③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
#### 제6장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

- 제7조(고충상담 신청 및 신고)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전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, 성희롱·성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
  - 1. 성희롱·성폭력 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,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
  - 2.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
  - 3. 일·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인사제도 개선을 제안하려는 자
  -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 및 신고는 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- 제8조(고충상담) 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 등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아울러 상담시 상담원은 관련법령,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제8조의2(조사) ①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(국가인권위 원회 등)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 를 중지할 수 있다.
  - ⑤조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  - ⑥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.
  - ⑦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9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사장(인사·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,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  -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  - 3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 -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
  -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  - 6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·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

-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- 7. 그 밖에 신고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
- ②사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,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.
- ③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치료 지원,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④상담원,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·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 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10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①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사장은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및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처리와 관련하여 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양성평등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 - ③인사담당부문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공사 소속 직원 중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해 선출한다.
  -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- ⑤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,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.
- 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 청할수 있고,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  -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.

- 1. 성희롱·성폭력의 판단
- 2.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
- 3. 그 밖의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
- 4. 일·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- 제14조(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) ①사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.
  - ②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. 05. 13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. 11. 1.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. 9. 22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. 5. 29.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. 2. 25.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. 9. 18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. 10. 16.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지 1】

성희롱·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								
접수일	20		담당자		(서명)			
당사자	신청인	성명		소속(팀)				
		직급		성별				
	대리인 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성명		소속(팀)				
		직급		성별				
	행위자	성명		소속(팀)				
		직급		성별				
상 담 (신 청 <b>)</b> 내 용			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목		- 등을 기록합니다.			
요구사항 ※ 조사를 원하는 경우	1. 성희롱·성폭력의 중지( ) 2. 공개사과( ) 3. 징계 등 인사조치( ) 4. 기타( )							
처리결과								
※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.								

## 【별지 2】

성희롱·성폭력 신고서								
접수일	20		담당자		(서명)			
기본사항	신고인	성명		소속(팀)				
		직급		성별				
	피해자	성명		소속(팀)				
		직급		성별				
	행위자	성명		소속(팀)				
		직급		성별				
신 고 내 용	※ 6하 원칙에 의해 문	제가 되는 행위,	지속성의 여부, 목격지	· 혹은 증인의 유무 1	등을 기록합니다.			
처리결과								
※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.								